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수강생의 출입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보완·명시하여 교육운영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강생의 이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나. 사용허가 제한을 보완·명시(안 제7조)
- 다. 변상조치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은”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을 “시장은”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4조, 제7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출입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행사의 경우
3. 종교적 의식, 포교활동을 위한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평생교육원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변상 조치)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구조물이나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제8조(종전의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제4조에 의거 시설”을 “제5조에 의거 시설의”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부터 제5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구미시평생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시설구분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 고
기본 시설	대강당	평일주간 1회 (4시간이내)	6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회의실	〃	30,000원	
	강의실	〃	30,000원	
부대 시설	냉·난방 (대강당)	• 냉방 1회 (4시간이내) • 난방 1회 (4시간이내)	4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냉·난방 (회의실· 강의실)	• 냉방 1회 (4시간이내) • 난방 1회 (4시간이내)	3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강료) ①시장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수강료 면제)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에 한한다.	제3조의2(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 ----- 경우에는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출입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제4조 (생 략)

제5조 (생 략)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4. 기타 평생교육원 시설 운영

가진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삭 제>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
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4조에 의거 시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를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의 경우
2.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행사의 경우
3. 종교적 의식, 포교활동을 위
한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평생교육원 시설 운
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

1. ~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의 -----

--
5. 그 밖에 -----

제9조(사용료) 제5조에 의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
하여 사용할 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 사용료 전
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의 -----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

----- 제9조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

-----.

1. ----- 그 밖의 -----

2. -----

----- 경우 -----

3. -----

----- 경우 -----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u>때</u> :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u>때</u> :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u><신 설></u> <u>제11조 · 제12조</u> (생략)	4. ----- ----- ----- <u>경우</u> ----- ----- 5. ----- ----- ----- <u>경우</u> ----- ----- <u>제12조(변상 조치) 시설의 사용자</u> <u>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u> <u>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u> <u>한다.</u> <u>1.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u> <u>2. 그 밖의 구조물이나 기물 등</u> <u>을 파손하였을 경우</u> <u>제13조 · 제14조</u>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

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소과 실 · 과		평생교육과
입 안 자	과 장	박 만 용
	담 당	조 영 열
	담 당 자	김 재 곤 (480-4336)